

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10(목)	
		<p>작성 · 문의</p>	<p>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(☎ 044-200-2056)</p> <p>국조실 해양교통정책과장 송기진 (☎ 044-200-2239)</p> <p>국조실 노사정책과장 김수진 (☎ 044-200-2375)</p> <p>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진곤 (☎ 02-2110-4036)</p> <p>국토부 항공보안과장 박준형 (☎ 044-201-4232)</p> <p>관세청 국경감시과장 여인옥 (☎ 042-481-7920)</p> <p>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(☎ 044-202-7588)</p> <p>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장윤정 (☎ 044-215-4952)</p> <p>산업부 기업협력과장 진종욱 (☎ 044-203-4203)</p> <p>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최무진 (☎ 044-200-4584)</p>
<p>* 엠바고 : 3.10일 10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</p> <p>* 공동배포 : 법무부·국토부·관세청(공항보안), 고용부(노동시장 이중구조)</p> <p>#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, 고용부장관 별도 브리핑(회의 직후, 10:40)</p>			

정부,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·불법밀입국 차단한다

-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, 「공항보안 강화대책」·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」 확정
- (공항보안) △업무종료 후 출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 △공항 고위험 환승객 직접 인솔 △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△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 확대 배치
- (노동시장 개선) 상생협력, 일하는 근로자간 차별해소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

□ 정부는 3.10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, 「공항보안 강화대책」, 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」을 논의·확정하였다.

* 참석자 : 법무부 장관, 고용부 장관, 국토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행자부 차관, 산업부 1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국정원 2차장, 관세청장, 중기청장, 경찰청장

공항보안 강화대책

□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*,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, 법무부·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'공항보안 강화대책'을 마련하였다.

* 인천공항 밀입국(1.21 중국인, 1.29 베트남인) /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(1.29)

○ 지난해 인천공항 여행객 수만 해도 약 5천만명 육박하는 등 공항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국가의 최대 관문으로서 국경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이다.

○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□ 우선,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,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.

①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,

* △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 지정·모니터링(1.29~)
△전국공항 특별·불시 점검 실시(1.29~2.5)

②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으며,

*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, 환승객 미탑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항 대테러 상황실(공항공사)과 출입국사무소(법무부)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

-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*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하여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.

* 환승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, 입국금지자 등

③ 또한,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,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.

④ 이와 함께,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(총 42명으로 구성)을 신설하고,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 인력도 확충하였다.

□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·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

□ 먼저,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공항에는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*이 상주하고 있고, 출입국심사장-세관-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

-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보안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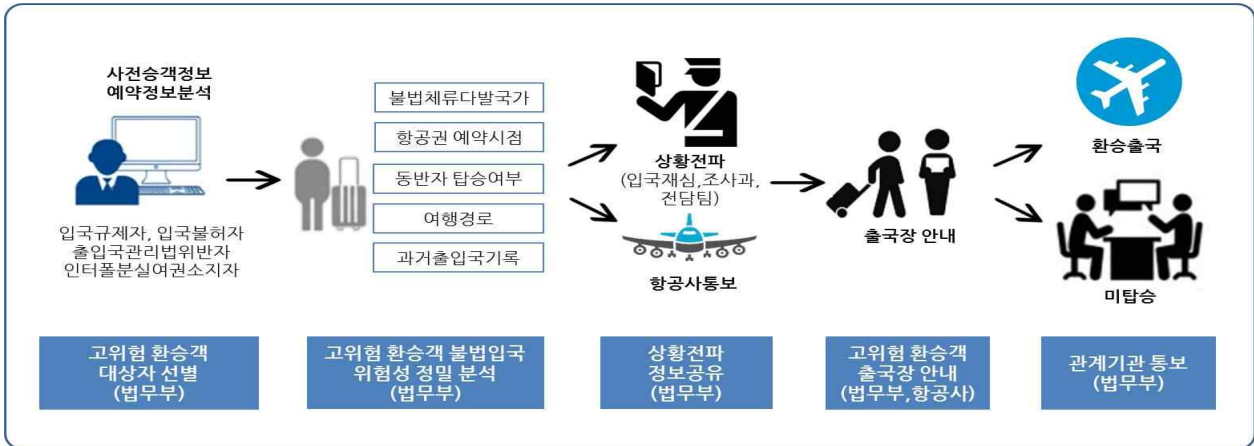
*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및 경찰청,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, 국정원 등 20개 기관 상주(2,000여명 근무)

○ 이에 따라, 취약지역(자동출입국심사대, 승객밀집구역 등)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,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*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('16.4)이다.

* 보안검색장 통과 환승객 정보 실시간 통보 → 일정시간 경과 후에도 환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승객 조기 발견 → 환승 조치

- 또한,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**고위험 환승객 안내**를 **제도화***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불법입국 고위험 환승객 집중관리>



- 이와 함께,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**조력자·브로커**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,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**합동수사도 강화**(‘16.3~)할 방침이다.
- 또한 점차 고도화·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**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**(‘16.6)한다.
-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‘**테러보안대책협의회**’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여 **현장 이행력을 확보**하고,
 -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「**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***」을 제정하여 사고대응에 **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** 할 계획이다.
- * 경계구역 시설보안 주체 및 유지관리·경비 등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사고 상황별 기관 간 협조사항 등 규정

2.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

-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**노후화된 보안장비·시설**을 단계적으로 **교체·확충**하는 등 **보안인프라**를 구축해 나간다.
- 기존 CCTV를 **고화질**(41만 → 210만 화소)·**지능형 영상감시** 기능이 갖춰진 **디지털 CCTV**로 **전면 교체**하고,

【참고: CCTV 교체·확충 계획】

- (인천공항) 1차 1,134대(~'17.10), 2차 878대(~'18.6) 교체
- (김포·김해 등) '16년 325대 → '17년 405대 → '18년 286대 → '19년 313대
- (출입국심사장) CCTV 전면교체(30대), 사각지역 CCTV 증설(66대)

- 인천공항 △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△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*를 각각 설치하여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.

* 사람접근 인지 → 경고음 자동통보(상황실)하는 시스템(현장실험 후 도입)

○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 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('16.10) 할 계획이다.

□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, 출입국심사장 숲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*에 대한 관리를 강화('16.6)한다.

* 보호구역 : 보안검색장, 출입국심사장, 세관검사장 등

3. 보안인력 역량제고

□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,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.

○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'항공보안법'상 벌칙규정*(과태료, 벌금 등)을 엄격히 적용한다.

* 보안검색업무 소홀,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시 등

○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,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,

-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(수주실적 등)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*한다.

* (기존) 수주규모 30억원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 가능 → (변경) 수주규모 하향

- 또한,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·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('16.3~)한다.
-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 보안요원에 대한 엄정한 근무관리와 함께 우수 보안요원에 대한 포상·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,
 -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 내실화, 교육대상 확대 등 보안의식 및 전문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- * (보안교육 대상 확대) 보안업무 담당 인력 → 상주기관 직원, 면세점·식당 직원 등 포함

4. 테러 대응체계 공고화

-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,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.
-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*(BDO, Behavior Detection Officer)을 일반구역에도 배치·운영('16.3~)하고,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.
 - *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·표정 등을 감지, 거동수상자에 대해 휴대품 등을 검색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(보호구역내 50명 운영중 → 일반구역 포함, 70명으로 확대)
-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'테러현장지휘본부'(본부장 : 지방항공청장)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·통제권을 부여하고,
 -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'17년부터 전면 시행(출입국관리법 개정, '16.3)한다.
 - * 현재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로 국정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('15.2~), 법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·적용('16.9)

-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과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,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·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【첨부】 공항보안 강화대책 주요내용 (요약)

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

- 우리 노동시장은 '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, 직장 안정성을 갖춘 대기업·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되며,
 - 두 부문은 임금격차는 물론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.
 - * (임금수준) △대기업·정규직(100 기준) △대기업·비정규직 64.2
△중소기업·정규직 52.3 △중소기업·비정규직 34.6
 - ** (평균 근속기간) 대기업·정규직은 10년 2개월,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4년 4개월
- 두 부문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, 원·하청 관계에 의한 영향 등 경영환경 측면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,
 -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, 대기업·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과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이 대기업·有노조·정규직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.
- 그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하여 고용률 70% 로드맵, 경제혁신 3개년 계획, 노동개혁(노사정 대타협)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·시행해 왔다.

【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】

- (고용률 70% 로드맵)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, 청년·여성 고용가능성 제고
- (경제혁신 3개년 계획) 대·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,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
- (9.15 노사정 대타협) 노동시장 규범의 명확화,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배려 등

- 이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*도 있었지만,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이중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* (분배지표) 지니계수('08년 0.314 → '14년 0.302), 소득5분위 배율('08년 5.71→ '14년 5.41)
(고용지표) '15년도 상용직·정규직 근로자 비중 각각 4.7%p, 0.8%p 상승('12년 대비)

- 특히, 한·일의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이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.

<한·일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GNI 대비 임금비교('14년 기준)>

(단위: 배)

자동차		정유		조선	
(한국) ○○차	도요타	(한국) ○○사	JX홀딩스	(한국) ○○중공업	미쓰비시 중공업
3.40	1.79	2.94	2.61	2.64	1.74
금융		철강		공공	
(한국) ○○은행	미쓰비시UFJ 파이낸셜	(한국) ○○제철	신일 철주금	(한국) ○○공사	도시재생기구
2.94	2.36	3.05	1.28	2.31	1.82

*자료: (한국) 전자공시시스템, (일본) <http://nensyu-labo.com>

-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
- 이번에 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’을 마련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대기업·정규직 부문의 경직성·불공정성 개선

- 첫째, 대기업·정규직 부문의 경직성·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△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관행 확립 △원·하청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.
- 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공공·금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고,
 - 중점관리사업장 지도 강화,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, 통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개편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.
- 공정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“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”을 구성*하여 교육·컨설팅·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(16.3월~, 고용부),

* 변호사, 노무사, 노동법·HRM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,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

- 원·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△상생결제시스템 확산* △자진시정 면책제도** 및 익명제보센터*** 운영 활성화 △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* △동반성장지수, 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 △세액공제(결제 금액의 0.1~0.2%) △상생결제 취급은행 및 참여기관(대기업 → 중견기업, 공공기관) 확대 등

**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시 모든 제재조치 면제, 조사개시후 30일 이내 자진시정시 벌점·과징금 면제

***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운영 중(15.3월 하도급·유통분야 구축, 16.3월 가맹분야까지 확대)

2. 상생고용을 위한 대·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

- 둘째, 상생고용을 위한 대·중소기업 노사의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△대·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기반 마련 △원·하청간 동반성장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수직적·다단계 계열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은 1차 협력사로, 1차 협력사는 2·3차 협력사로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우선, 임금 상위 10% 임·직원의 임금인상 자제, 임금피크제 실시, 기업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고용 확대,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.

- 또한 △30대 그룹과 협력하여 원청이 하청·협력업체 선정시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△원청이 사내·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”을 확대(16.3월~, 고용부)한다.

- 원·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제고*하여 성과 공유 모델을 전파·확산해 나가는 한편,

*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제혜택 (출연금의 7% 세액공제)

-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(중소기업)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반영하고, 재정·세제혜택을 통한 근로복지기금 활용* 확대 등도 추진한다.

* △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 실시 또는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시 재정·세제 지원 △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재정·세제혜택 부여

3.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

- 셋째,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하여 △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△불법파견 등 집중단속 △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△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적절한 정책대안을 패키지로 담은 비정규 로드맵을 마련('16.하반기, 고용부)하고,
 - △재정·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규직 전환 촉진 △기간제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('16.4월, 고용부) 및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.
-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,
 - △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확대(건설기계 1인 사업장) △건설근로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.
-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권익센터*를 신설하여 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, 홍보·간담회**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간다.

*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청소년 상담 전담창구 마련('16.4)

** 사업주단체(프랜차이즈 협회 등), 가맹점주와 협약체결 및 간담회 추진(연중)

4.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

- 넷째,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하여 △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△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△장시간근로 개선 △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.
 - 특히, 모든 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*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중요범죄는 시정기간 없이 사법처리, 시정기간 단축 등 추진(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, '16.7)
-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10%의 대기업·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%의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도모를 위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대타협의 근본정신”이라며,
 - “이번 대책은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토대로 만들어 졌으며,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”고 하였다.
 - 또한 “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중단 없는 노동개혁 실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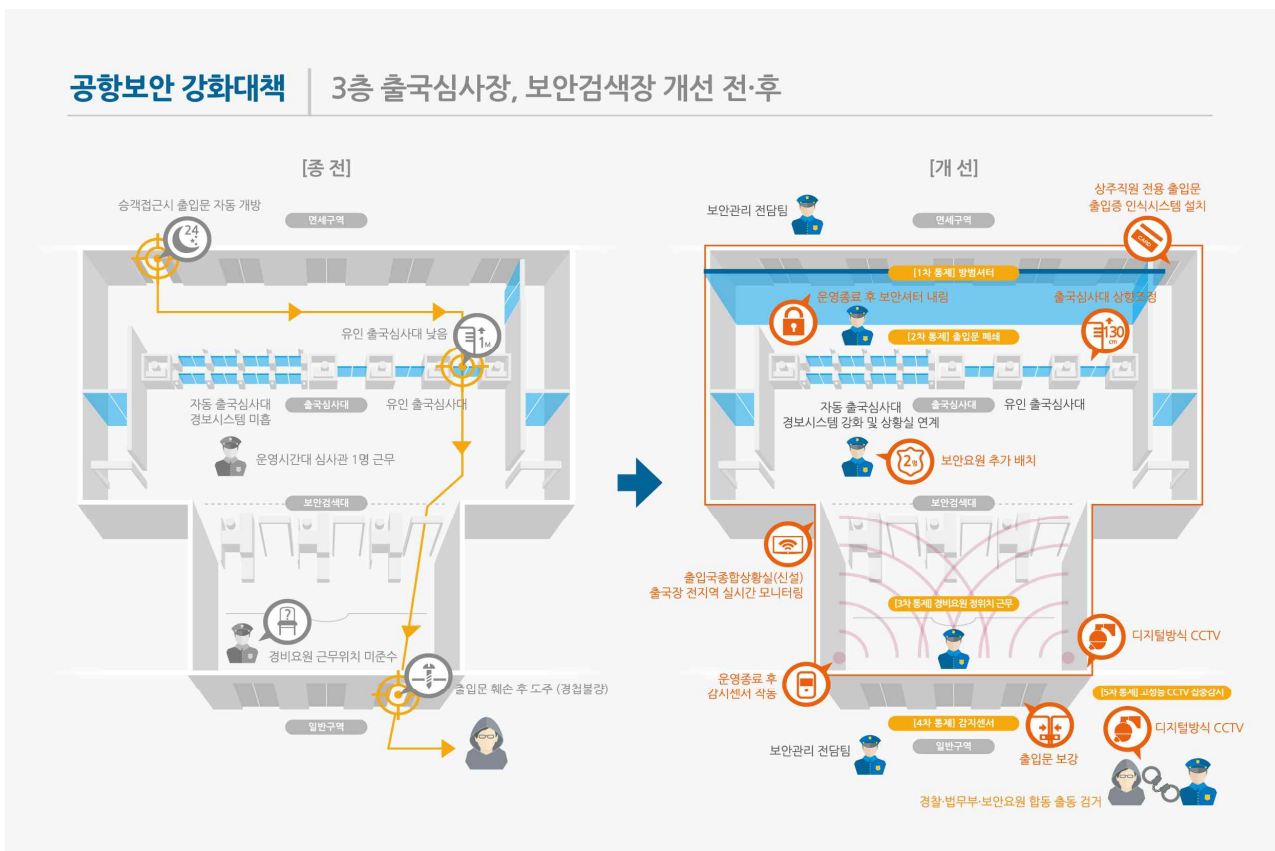
1] 공항보안 강화대책 전·후 비교

구분	종전	개선
근무 기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무자세 해이 • 순찰 미흡 • 근무여건 열악 • 보안업체 책임성 미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상근무 체계 도입, 근무태세 불시 점검 • 경비 책임구역 지정, 야간시간대 순찰 강화 • 근무여건 개선(경찰인계 조치, 불이익금지, 자긍심 고취 방안 마련 등) • 보안업무 태만 시 계약 해지 • 보안사고 발생시 벌칙규정 엄격 적용 및 경영평가 반영 강화
협업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탑승 환승객 정보공유 미흡 • 불법입국 발생시 정보공유 미흡 • 고위험환승객 관리 협조체계 부재 • 환승객 정보 미공유 • 관계기관별 통합적인 매뉴얼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기관 간 미탑승 환승객 발생 즉시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 실시 • 대테러상황실과 관계기관 즉시 정보전파 시스템 구축 • 고위험환승객 안내시스템(법무부-항공사) 도입 • 환승객 정보 공유 •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관련 매뉴얼 제정
보안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입문 부실 • 취약지역 CCTV 부족 • 출입국심사장 보안셔터 미설치 • 자동입국심사대 경보시스템 미비 • 출국검색장 폐쇄시 감시센서 미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입문 시건장치 보강 및 이중 잠금장치 • CCTV 추가설치 • 출입국심사장 보안셔터 설치 • 이중 경보시스템 구축(법무부 →TCC) • 출국검색장 폐쇄시 감시센서 작동
보안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CTV 모니터 요원 부족 • CCTV 모니터 소홀 • 보안관련 전담팀 부재 • 출입국심사대 보안인력 부족 • 보안교육 부실 • 경비·검색 인력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CTV 모니터 요원 증원(12명) • 취약지점 선정 후 집중 감시 • 전담팀 신설(총42명) • 출입국심사대 보안인력 추가 배치 • 취약지역 선정·실시간 감시 • 전문교육 강화 및 교육대상 확대 • 업무진단 후 지속적으로 협의·보강 • 보안업무 직접수행 추진

② 공항보안 강화대책 10대 과제



③ 공항보안 강화대책 전·후(출국심사장)



4 공항보안 강화대책 전·후(입국심사장)

공항보안 강화대책

2층 입국심사장, 1층 세관구역 보안강화 개선 전·후

